

	<h2 style="margin: 0;">RCC센터운영규정</h2>	규정번호	4-1-14
		제정일자	2025.09.01.
		개정일자	
		개정차수	
		소관부서	산학협력단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산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 RCC센터(RCC: Regional Cooperation Center, 이하 "센터"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주요업무 및 기능) RCC센터는 지역사회와의 지속가능한 협력을 강화하고, 지역 산업·경제·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

- ① 지역사회 산업체에 대한 지식·기술 지원
- ② 지역사회 인적·물적 자원 공유
- ③ 지역사회와의 교류·협력(지역정책협업, 지역교육혁신, 지역가치실현 등)
- ④ 지역사회 연구 및 유지·발전 기여 사업
- 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취·창업 지원체계 구축
- ⑥ 대학의 연구·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사회 지원
- ⑦ 기타 센터 설치 목적과 부합되는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3조 (조직) ① 센터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전임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.

-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 센터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직원과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 3 장 운영위원회

제5조 (구성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RCC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포함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-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, 위원회의를 소집한다.
- ④ 위원장의 임기는 센터장의 임기와 같으며,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의 결의는 과반수의 출석,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회는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센터의 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
 2.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 3. 센터의 운영계획 및 수립에 관한 사항
 4.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6조 (소집 및 의결)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무회계

제7조 (재정 및 회계) ① 재정은 「안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정관 및 산학협력단운영규정」에 따른다.

② 회계는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